

김혜수는 왜 법정서 쫓겨났나... '소년보호처분, 가해자 중심의 법정'

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.

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'소년심판'에서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김혜수(심은석)는 “사건이 사건인 만큼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해보라.”고 말합니다. 과거 판사 이정은(나근희)이 “누가 여기 오라 그랬어요?”라며 자신에게 퇴정을 명령했을 때 피해자 가족의 심정을 알기 때문입니다. 이는 소년법에 근거한 현실을 반영한 장면입니다. 실제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소년이라면 재판에 마음대로 참석할 수 없는데요, 이에 대해 형사법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

◇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나요?



〈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'소년심판'에서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역할을 맡은 김혜수〉

먼저 나이로 구별합니다. 촉법소년 즉 만 10~13세는 어떠한 범죄를 범해도 오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. 그러나 14세~19세까진 죄질에 따라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. 소년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보호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◇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?

네, 소년보호사건 재판 절차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.

보호처분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심리합니다. 또 비공개로 진행합니다.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는데요, 반대로 말하면 판사의 허가가 없으면 피해자라도 재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보호처분을 받는지 모릅니다. 여기에 더해 보호처분의 형량이 무겁다고 따질 수 있는 쪽도 오직 가해 소년만 가능합니다. 보호처분은 말 그대로 가해자를 위한 가해자 중심의 법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보호사건 절차를 종합해 보면 적어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, 그리고 피해회복이 충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

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·변호인·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. 이를 통해 피해자가 ‘용서’하지 않았고, 또 ‘피해회복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쉽게 보호처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.

◇소년 재범률이 높은데요, 이를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있을까요?

소년의 범죄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. ‘가정불화’, ‘학교 밖 소년’, ‘분노조절장애’입니다. 이 세 가지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사회로 나오더라도 하위문화에 다시 휩쓸려

또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. 그러므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소년에게 가정이 필요할 때는 가정, 학교가 필요할 때는 학교를, 치료와 상담이 필요할 땐 그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.

그래서 저는 사회에 나온 소년 한 명을 위해 5명의 ‘멘토지원제도’를 강력히 제안합니다. 가정, 학교, 직업, 상담, 치료를 담당해 줄 ‘우리연대’를 말입니다.

범죄소년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수도 없고, 절대 격리해서도 안 됩니다. 이제 더 이상 유도피아적 이상을 그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소년범죄 중 형사처벌이 필요할 땐 과감하게 적용을 합시다. 그러나 이들에 관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. 이들이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강력한 연대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.



〈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〉

(출처/조선일보)